

# 예산총칙

2019년도 추가경정 제1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06,640,128	60,199,204
일반회계	1,500,403,711	45,012,111
특별회계	506,236,417	15,187,093
공기업특별회계	299,663,327	8,989,900
상수도사업	84,229,096	2,526,873
하수도사업	215,434,231	6,463,027
기타특별회계	206,573,090	6,197,193
공유재산관리	65,812,268	1,974,368
의료급여기금	7,612,579	228,377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824,000	54,7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251,641	37,549
교통사업	51,129,426	1,533,883
철도건설사업	6,423,222	192,697
폐기물처리시설	5,560,000	166,800
도시재정비촉진	1,303,027	39,091
도시개발	17,688,632	530,659
기반시설 설치	4,539,229	136,177
문화시설건립	28,950,000	868,500
도시재생	14,479,066	434,37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746,404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2,746,404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제 7 조 201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